

의정활동보고서

제181회 임시회(2003. 9. 18 ~ 10. 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개회사에 앞서,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의 강타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김국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하반기 의원연수회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셔서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예년에 보기 드물게 잦은 강우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발생케 하더니,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급습하여 귀중한 인명과 농·어민들의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재난복구에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재난의 복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서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그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심도있는 안전심의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에게는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회기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9. 18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위원회 활동사항

4. 기타사항

부 록

☐ 조 례 안

☐ 동 의 안

I. 개 황

- 경상북도의회 제181회 임시회는 2003년 9월18일 개최하여 10월 2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5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는 9월18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 출석변경의건, 제14호태풍매미로인한피해및복구지원상황보고,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 하였다.
- 회기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지역현지확인, 안전심사를 통하여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 경상북도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가결 하였다.
- 10월 2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상북도물류 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해외연수및국제친선교류활동결과보고를 한 후 제181회 임시회를 폐회 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외 19인

라. 집회공고일 : 2003. 9. 3

마. 집 회 일 : 2003. 9. 18(목)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9. 18 ~ 10. 2(15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 회(누계 31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5	1	1	1	1		1		
누계	146	16	16	20	23	16	18	16	2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3. 9. 18(화) 11:00	1. 제181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3. 제14호태풍매미로인한피해및복구지원상황보고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 " "
10. 2(목) 11:00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제2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2003년도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8. 해외연수및국제친선교류활동결과보고(3건)	제 2 차 원안가결 " " " " "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16(화) 11:00	○ 제182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18(목) 11:00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유 보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30~10.1	○ 현지확인 - 태풍피해복구상황(소규모주민시설, 사회복지시설 - 고령군) - 자연환경연수원종합연수관건립상황 (구미시)	
10. 1(월) 14:00	○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제2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 "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25~9.26	○ 태풍피해지역 현지확인(경주,영천,영양)	
10. 1(월) 11:00	○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 22(월)	○ 현지확인 - 신물질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구미화훼시험장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 22(월) 11:00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9.23~9.26	○ 현지확인 - 태풍피해지역및문화관광개발·기업 활동상황(구미,상주,문경,안동)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9.19~9.22	○ 현지확인 - 태풍 “매미” 피해현황보고및피해현장 방문(영천,경산,청송,영양)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7 (118)	7 (118)	7 (108)	(10)				1
조 례 안	소 계	6 (51)	6 (51)	6 (50)	(1)				
	의 회 제 안	(1)	(1)	(1)					1 (상정유보)
	도지사 제 출	6 (40)	6 (40)	6 (39)	(1)				
	교육감 제 출	(10)	(10)	(10)					
예 산 · 결 산		(12)	(12)	(6)	(6)				
동 의 · 승 인		1 (28)	1 (28)	1 (27)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7)	(7)	(7)					
기 타 안		(13)	(13)	(12)	(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9 (121)	8 (119)	7 (52)	(12)	1 (28)	(7)	(7)	(13)			1 (2)
의회운영	(2)	(2)	(1)				(1)				
기 획	1 (13)	(12)	(6)		1 (4)	(1)		(1)			1 (1)
행정사회	5 (33)	5 (32)	4 (22)		1 (9)	(1)					(1)
교육환경	1 (16)	1 (16)	1 (12)		(3)			(1)			
농 수 산	(7)	(7)	(2)		(4)	(1)					
산업관광	2 (14)	2 (14)	2 (7)		(6)		(1)				
건설소방	(7)	(7)	(2)		(2)	(2)		(1)			
특 별	(12)	(12)		(12)							
본회의	(17)	(17)				(2)	(5)	(10)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누 계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2 (54)	1 (4)	3 (8)	3 (7)	2 (9)	(4)	(3)	2 (5)	(4)	1 (10)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2 (6)	1 (3)	1 (2)	(1)						
교육환경	3 (9)			1 (1)		(4)		2 (4)		
농 수 산	(5)			(1)	(1)				(3)	
산업관광	2 (12)		2 (6)				(3)			(3)
건설소방	4 (17)	(1)		2 (4)	2 (8)			(1)	(1)	(2)
특별위원회	1 (3)									1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14 (52)	14 (52)				2 (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2 (6)	2 (6)				
교육환경	3 (9)	3 (9)				
농 수 산	(5)	(5)				
산업관광	1 (10)	1 (10)				2 (2)
건설소방	5 (17)	5 (17)				
특별위원회	3 (3)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박승학 의원외 14인 (2003. 9. 2)	경상북도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교육환경 (2003. 9. 2)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행정사회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사회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행정사회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산업관광 (2003. 9. 8)
경상북도지사 (2003. 9. 8)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관광 (2003. 9. 8)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7. 1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 7. 24
2003. 7. 1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 7. 24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행정사회위원회	2003. 8.18 ~ 8.20	울릉도 일원 및 독도	○ 사업장 현지확인 ○ 독도경비대 위문
징계자격특별 위 원 회	2003. 8.25 ~ 8.27	광주시의회 및 전북도의회, 새만금 간척사업장등	○ 의회현황 청취 ○ 윤리특위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새만금간척사업장 견학등
농수산 위원회	2003. 9. 5	포항시 장기면 월포항	○ 적조발생 현황 청취 ○ 적조방제 대책 토의
농수산 위원회 ※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 5명포함	2003. 9.16	영천,상주,의성, 영양등 태풍 피해발생지역	○ 태풍피해 발생지역 현황과악
의회운영 위원회	2003. 9.16 11:00	운영위 회의실	○ 당면현안사항 보고 청취 ○ 제182회 임시회 회기협의

4. 기타사항

- 양동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
 - 일 시 : 2003. 7. 15(화) 14:00
 - 장 소 : 양동 마을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문화환경포럼 발기인 대회
 - 일 시 : 2003. 7. 15(화) 19:00
 - 장 소 : 안동시청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
 - 일 시 : 2003. 7. 21(월)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도 4-H 야영교육(봉화식)
 - 일 시 : 2003. 7. 15(화) 20:00
 - 장 소 : 영천시 영동교 둔치
 - 참 석 : 농수산위원, 방대선 위원장(축사)
- 일본 친선교류 방문(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기 간 : 2003. 7. 22 ~ 7. 26
 - 장 소 : 오사카, 나라, 교토, 시마네현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중 부의장등 4명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교육환경위원회)
 - 기 간 : 2003. 7. 22 ~ 7. 23
 - 장 소 : 부산
 - 참 석 : 김순건 간사, 박승학 위원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행정사회위원회)

- 기 간 : 2003. 7. 24 ~ 7. 25
- 장 소 : 대전, 충남
- 참 석 : 김희문 위원장, 이현준 간사, 나종택·우성호 위원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영상 시사회

- 일 시 : 2003. 7. 25(금) 11:00
- 장 소 : 엑스포공원 에밀레극장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제7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 일 시 : 2003. 7. 29(화) 19:00
- 장 소 : 영주 서천둔치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농수산위원

○ 러시아 친선교류 방문(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기 간 : 2003. 7. 30 ~ 8. 4
- 장 소 : 하바로프스크, 사할린등
- 참 석 : 최원병 의장외 12명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기원』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

- 일 시 : 2003. 8. 3(일). 09:30
- 장 소 : 경주보문단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침성대 영상관 준공식

- 일 시 : 2003. 8. 11(월). 11:30
- 장 소 : 엑스포 광장내 침성대 영상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 일 자 : 2003. 8. 13(수)
- 장 소 : 엑스포 조직위원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기념 앙드레김 패션쇼

- 일 시 : 2003. 8. 14(목). 18: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제5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 시 : 2003. 8. 15(금). 10:00
- 장 소 : 경주공고 체육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만세삼창)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3. 8. 21(목). 15:00
- 장 소 : 대구 팔공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 일 시 : 2003. 8. 21(목). 18:00
- 장 소 : 대구 월드컵 경기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3. 8. 21(목) 14:00
- 장 소 : 대구시의회
- 참 석 : 손규삼 위원장

○ 제주 도의원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3. 8. 22(금). 11:30
- 장 소 : 경주 원풍식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대구·경북지역 발전협의회

- 일 시 : 2003. 8. 27(수) 07:3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당면 현안사항 토의 간담회

- 일 시 : 2003. 8. 27(수) 10: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 2003 하반기 도의원 연수회

- 기 간 : 2003. 8. 29 ~ 8. 3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엑스포장
- 참 석 : 도의원 부부 및 자문교수 부부, 의장(축사)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충청북도의 날』 행사

- 일 시 : 2003. 9. 2(화) 10:30
- 장 소 : 엑스포 처용마당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강원도의 날』 행사

- 일 시 : 2003. 9. 4(목) 10:30
- 장 소 : 엑스포 처용마당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

○ 경상북도 실업계고교 실기경연대회

- 일 시 : 2003. 9. 4(목) 09:30
- 장 소 : 안동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도립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 일 시 : 2003. 9. 4(목) 11:00
- 장 소 : 경도대학 소운동장
- 참 석 : 김희문 행정사회위원장(축사), 이현준·나종택·정상진 의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자 : 2003. 9. 8(월)
- 장 소 : 안동 애명복지촌등 3개시설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장대진·권종연 의원

○ 태풍 피해 현황보고 청취 및 현지확인

- 일 자 : 2003. 9. 15(월)
- 장 소 : 현황보고-의장실, 현지확인-고령군 일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중·정무웅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 록

- 조 례 안 : 6건
- 동 의 안 : 1건

□ 조 례 안 : 6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제2의견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0. 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582”를 “3,629”로 하고, 제1호 중
“1,646”을 “1,69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582</u> 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u>3,629</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646</u> 명	1. : <u>1,693</u> 명
2.~4.(생략)	2.~4.(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0. 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0. 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 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유공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u>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u>국가유공자의</u> 직계존·비속, <u>국가유공자의</u> 직계비속의 배우자, <u>국가유공자의</u>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u>국가유공자</u>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u>국가유공자와</u>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조의2(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u> ----- <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 --, <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 --, <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 -----(<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 ----- <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 --) -----.

현행	개정안
1.~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국가유공자</u> 또는 <u>국가유공자</u>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u>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u>----- ----- ----- ----- -----.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0. 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0. 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경제통상실장, 농수산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 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0. 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등) ①문화재 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도지사, 시장·군수(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당해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2.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자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수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⑤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200미터이내.

2.경상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준용)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4조의2의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 4 내지 제11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크隣할뵐게

[illegible]

□ 동 의 안 : 1건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3. 9. 6
-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 다. 회부일자 : 2003. 9. 8
- 라. 상정일자 : 제1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년 10월 1일)
 - 상정·질의·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남성대)

가. 제안이유

-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축한 홍보전시판매장의 기부채납과
- 우리 도의 자연환경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교육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연수원 부지내에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종합교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토지 6필 : 2,217.2m² (671평 정도)
 - 건물 2동 : 3,675.86m² (1,113평 정도)
- 재산의 처분 : 해당없음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신현의)

□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취득재산의 현황은

-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총괄내역은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은 토지 6필 2,217.2m²(671평 정도)와 건물 2동 3,675.86m²(1,113평 정도)이며, 재산의 처분은 해당 없음.
- 취득재산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취득내용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 남효채)에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3-8번지에 건립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1필 340.2m², 건물 1동 503.86m²(취득추정액 1,000백만원)을 취득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현장판매와 함께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한편.

- 구미시 남통동 산33번지의 4필지에 자연환경연수원종합교육관을 신축함에 따른 토지 5필 1,877㎡, 건물 1동 3,172㎡(취득추정액 4,700백만원)을 취득하여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행함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으로는

-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은
 -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경상북도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을 개발하여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인 고유 브랜드를 갖지 못해 수출이나 내수판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디자인 개발과 유통, 판촉분야 등에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공동브랜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 공동마케팅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03년 9월 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8번지에 대지 103평, 건평 152평(지하1층/지상3층)규모의 홍보전시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써, 실라리안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자연환경연수원 종합교육관은

- 우리 도 자연환경연수원이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금오산 도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 교육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이 높을 뿐 아니라, 또한 연간 정규교육생 2만여명이 입교하여 생활하거나 또한 전국에서 약 20여만명에 달하는 견학생들이 찾고 있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연교육기관이나, 기존 연수원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한 첨단교육이 불가능하여 학습효과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 한계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 바,

- 교육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도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 마인드를 크게 확산하는 한편,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교육메카」로 도약하고자 현대감각에 부응하는 제반시설을 갖춘 종합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은 지난 2002. 10. 14일 기공하여 2003. 9. 1일 건물이 완공되어 이미 개관한 시설물이며, 자연환경연수원 종합교육관은 2003년도 본예산에 건축예산 일

부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 향후에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배하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제181회 정례회)

2003. 10 인쇄 / 2003. 10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

배 부 표

배부처	배부량	배 부 내 역
계	240	
도의원	57	도의원57
의회사무처	27	의장실(1), 부의장실(2), 사무처장실(1), 담당관실(4부×2), 전문위원실(1×8), 자치연구실(1), 자료실(2), 보관(4)
경상북도	24	도지사, 부지사(1×2), 국장(1×12), 의회계, 법제계 자료실,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건설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교육청	5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2), 의회계
교육위원회	2	사무국장, 사무과
시.군	23	
시.군의회	23	
정 당	3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도지부
도서관	12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카대,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경주동국대, 상주산업대, 경도대학, 도립구미도서관
언론기관	16	매일, 영남, 대구, 경북, 경북매일, 광역, KBS 대구, 포항, 안동, MBC 대구, 포항, 안동, TBC, CBS, PBC, BBS
국 회	2	도서관(1), 의사과(1)
시.도의회	15	
연구소	2	영진전문대지방자치연구소, (사)지역발전연구센터
위촉변호사 및 자문교수	19	고문변호사(5), 자문교수(14)

우 편 발 송 대 상 기 관

배 부 처	수량	주 소	우편번호
계	51		
한나라당 경북지부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13	706-010
새천년민주당 경북지부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10(가아빌딩5층)	706-013
자유민주연합 대구경북지부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2	706-060
경북대학교 도서관	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2039	702-011
계명대학교 도서관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7동 2139	705-037
대구대학교 도서관	1	경북 경산시 진량면 내리 15	713-830
영남대학교 도서관	1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712-160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1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713-702
포항공대 도서관	1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	790-150
금오공대 도서관	1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730-070
안동대학교 도서관	1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760-380
경주동국대 도서관	1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80-350
상주산업대 도서관	1	경북 상주시 가장동 386	742-170
경도대학 도서관	1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947-1	757-800
도립구미도서관	1	경북 구미시 원평동 964-616	730-010
매일신문	1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2가 71	700-715
대구일보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81-2	701-032
영남일보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701-020
경북일보	1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	790-052
KBS 대구방송총국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0	701-023
KBS 포항방송국	1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도동 15-1	790-070
KBS 안동방송국	1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	760-290
대구 MBC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	706-011
포항 MBC	1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790-14	790-728

배 부 처	수량	주 소	우편번호
안동 MBC	1	경북 안동시 태화동 790-1	760-290
TBC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201-9	706-080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150-701
국회 의사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150-701
서울특별시의회	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0-1	100-101
부산광역시의회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600-010
대구광역시의회	1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	700-421
인천광역시의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405-220
광주광역시의회	1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501-701
대전광역시의회	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9-1	301-714
울산광역시의회	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680-701
경기도의회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441-701
강원도의회	1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15	200-700
충청북도의회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360-765
충청남도의회	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301-763
전라북도의회	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	560-761
전라남도의회	1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501-702
경상남도의회	1	경남 창원시 사림동 1	641-702
제주도의회	1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1-45	690-700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218	702-020
(사)지역발전연구센터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3-15	706-013
경북매일	1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 1가 60-14	706-011
대구신문	1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71-4	700-423
CBS	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가 7	702-050
PBC	1	대구시 중구 계산동 2가 71 매일빌딩6층	700-082
BBS	1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156-1 진각빌딩	700-430

